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9.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출자: 고성군수

1. 폐지이유

-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 8. 29.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지난 30년간 공영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은 실적이 없고, 공단 조성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은 미래산업과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 2019. 1.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생길 경우 자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184호

1) 예고기간: 2019. 9. 3. ~ 2019. 9. 23.(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정) 1989.08.29 조례 제1151호
(일부개정) 1991.03.23 조례 제1263호
(일부개정) 1998.07.18 조례 제1553호
(일부개정) 2012.10.15 조례 제2082호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8.08.09 조례 제2411호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 3. 23 조 1263>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8. 8. 9. 조241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91. 3. 23 조 1263>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91. 3. 23 조 1263>
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 <삭제 2018. 8. 9. 조2411>

제5조 <삭제 2018. 8. 9. 조2411>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1. 3. 23 조 1263>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이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 3. 23 조 1263>

제13조 <삭제 2018. 8. 9. 조2411>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91. 3. 23 조 1263>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강제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8. 8. 9. 조2411>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삭제 2018. 8. 9. 조2411>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 3. 23 조 1263>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신설 91. 3. 23 조 1263>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91. 3. 23 조 1263>

④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91. 3. 23 조 1263>

⑤군수는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1. 3. 23 조 1263>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